남해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결정내역 공표

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4. 10. 28. 결정한 남해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15년 ~ 2018년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결정			비 고
의정활동비	여 비	월정수당	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제1호 별표4에 따른 금액	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제2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금액	2015년 : 18,794,160원으로 한다.(1.7%인상) 2016년 : 2015년 월정수당으로 한다. 2017년 : 2016년 월정수당으로 한다. 2018년 : 2017년 월정수당으로 한다.	10.28(화) 제3차 회의에서 결정

2014. 10. 28.

남 해 군 수